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819 판결 [보증채무금등]

재판경과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8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30 선고 99나468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익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A 담당변호사 장BA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수CACACA동조합중앙회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민BB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1. 30. 선고 99나468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수CACACA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인수 의무 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각하 부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수CACACA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인수 의무 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시 ○○면 ○○리 산 00-0 외 21필지에 11개동의 건물로 된 농산물 가공 및 저장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신축을 추진하면서 1996. 10. 9. 소외 DA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DA건설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4개월, 공사금액 약 383억 원에 도급준 후 1996. 11. 12. 피고 수CACACA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수CB중앙회라고 한다)의 암사출장소장 남EA와 사이에 자금관리 및 보증채무인수에 관한 약정과 위 남EA, DA건설산업 등 3자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에 관한 약정을 각 체결하여 결국 ①원고가 소외 KK금융 주식회사(이하, KK금융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고, ②다른 금융기관이 그 지급보증을 하며, ③DA건설산업이 원고의 보증금융기관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고, ④이 사건 공장의 완공 후 피고 수CB중앙회가 위 공장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DA건설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순차 약정하였는데, 피고 수CB중앙회의 후임 FA지점장인 피고 유CC이 1997. 8. 28. 원고 및 DA건설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1996. 11. 12.자 채무인수 등 약정은 전임 암사동출장소장인 남EA가 본부의 승인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 수CB중앙회가 1997. 9. 9.(원심판결의 1997. 8. 28.은 오기로 보인다) KK금융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수CB중앙회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DA건설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조건으로 DA건설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인수 등 약정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DA건설산업은 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여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 불안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수CB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 등 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인수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DA건설산업은 1997. 12. 27.경 피고 수CB중앙회의 위와 같은 무효통보로 인하여 같은 피고에 의한 DA건설산업의 연대보증채무 인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나아가 1998. 1. 21. 피고 수CB중앙회의 인수대상인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KK금융에게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약 62억 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1998. 5.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단과 원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DA건설산업은 이에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수CB중앙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2000. 10. 6. 제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항소기각으로 확정), 피고 수CB중앙회에 대하여도 2002. 1. 11. 그 항소심에서 피고 수CB중앙회가 이 사건 채무인수 등 약정상의 기한이 도래하기전에 이미 그 약정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무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고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8957 판결로 이에 대한 피고 수CB중앙회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DA건설산업이 피고 수CB중앙회의 인수대상인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원고 및 피고 수CB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한 권리관계가 모두 종결되었다 할 것이니, DA건설산업과 피고 수CB중앙회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수CB중앙회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가 피고 수CB중앙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수CB중앙회에 대하여 DA건설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수CB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할수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도 상고장에는 물론 상고이유서에 그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수CB중앙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인수 의무 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각하 부분의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